

정부 양돈업 허가지침 개정 고시

농수산부 고시 제 86-23호

축산법 제13조의 2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양돈업 허가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한다.

1986. 8. 5.

농 수 산 부 장 관

양돈업허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축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인 규정에 의하여 모돈5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양돈업을 허가함에 있어 법 제13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한에 필요한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의 상한규모) ① 양돈업외허가는 영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모돈(이하“모돈”이라 한다) 1,000두 이내로 한다. 다만, 모돈 1,000두를 초과하는 두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수출돼지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모돈, 이경우에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년도 상반기의 돼지고기 수출실적 200kg당(정육기준) 1두로 환산적용하여 당해년도 하반기와 차년도 상반기중의 초과사육 허가두수를 신청한다.

2. 호당 사육규모 300두 이내의 농가와 개열화하여 돼지를 생산하고자 사육하는 모돈. 이경우에 초과사육이 허가된 모돈 두당 연간 13두의 자돈을 계열농가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사육이 허가된 모돈으로 부터 생산된 비육돈이 사육목적 이외의 용도로 출하된 때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육 부과금을 부과한다.

제3조(사육두수의 감축) 양돈업의 허가 신청당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상한규모를 초과하여 모돈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동조의 허가상한 규모이하로 제한하여 이를 허가한 때에는 허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허가두수 이하로 감축케 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신청인의 동일인의제등) 양돈업을 등록했거나 허가를 받은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타인 또는 관련법인 명의로 양돈업체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역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이를 동일인 소유의 동일 양돈장으로 간주하여 법 제13조의 2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상한 규모를 제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이경우 허가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에서의 사육두수확인, 사육조질, 감축명령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조치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신규 허가의 제한) 양돈업의 신규허가는 1984년 12월 가축통계조사 결과의 당해 시도의 전체 모돈수에 대한 허가대상두수의 비율을 초과하여 이를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1984년 12월 현재 허가대상이 없는 시·도에서는 전체 모돈두수대비 증가두수의 10% 범위내에서 양돈업을 신규로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